# 겸임교원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겸임교원의 임용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겸임교수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전문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자 중 교육 및 연구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어 학생교육에 능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본직기관이라 함은 현재 재직 중인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자격)** 겸임교원의 자격은 고등교육법 및 교수자격기준등에 관한규정에 의한 교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만 65세를 초과하지 않은 자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1)

1. 대학에서의 교수 및 연구내용이 본직기관의 직무내용과 유사하고 그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진 자
2. 본직기관에서 정규직원으로 상시(유사경력 3년 이상)근무하고 있는 현직자
3.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학기별 주당 2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할 수 있는 자
4. 타 대학소속의 전임교원 또는 연구원 초빙교원이 아닌 자

**제4조 (임용절차)** ① 겸임교원을 필요로 하는 학부·과(전공, 트랙)는 충원요구서를 임용예정학기 시작 4개월 전까지 학부·과(전공, 트랙) 회의와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19. 8. 1.)

② 총장은 교무처에서 확정된 임용예정인원에 따라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단과대학(원)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겸임교원지원자를 심사하고 추천된 최종임용후보자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에 임용한다.(개정 2019. 8. 1.)

③ 겸임교원이 담당하는 교과목은 순수 학술 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실험·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목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9. 8. 1.)

④ 겸임교원 지원자가 공개채용에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1.)

1. 겸임교원 임용지원서 1부 (전산입력)(개정 2019. 8. 1.)
2. 학력증명서 각 1부 (학사/석사/박사)(개정 2019. 8. 1.)
3. 강의경력증명서 1부(개정 2019. 8. 1.)
4. 사실근무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상근직 여부 확인 가능 要)(개정 2019. 8. 1.)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사업장 명시, 건강보험공단 발행)(개정 2019. 8. 1.)
6. 소속기관장의 겸직 동의서 1부(개정 2019. 8. 1.)
7. 연구(실무)경력증명서 1부(개정 2019. 8. 1.)
8. 연구실적목록 1부(개정 2019. 8. 1.)
9. < 삭 제 2019. 8. 1. >
10. < 삭 제 2019. 8. 1. >

⑤ 겸임교원으로 채용 확정된 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한다.(신설 2019. 8. 1.)

1. 겸임교원 담당교과목 확인서 1부
2. 겸임교원 활용계획서 1부

(1~2호 학부·과(전공, 트랙)장 작성 및 제출)

**제5조 (임용기간)** ① 겸임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하여 1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으며, 1년 이상으로 임용하거나 재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9. 8.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서 "교원"은 강사, 겸임교원등을 포함한다.(신설 2019. 8. 1., 개정 2020.08.12., 2021. 3. 1.)

1. 학기 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 출산휴가, 휴직, 파견, 징계, 잔여기간이 6개월 이하인 연구년 또는 교원의 직위해제, 퇴직, 면직, 사망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겸임교원이 필요한 경우
2. 학교 외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1년 미만의 연구 또는 산학협력에의 참여를 위하여 겸임교원을 임용하는 경우
3. 교육과정 또는 수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는 제외한다)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를 겸임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③ 수업반응도 평가 점수가 2학기 연속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임용기간 갱신 및 재임용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설 2020.08.12.)

**제6조 (임무)** ① 겸임교원은 소속기관에서의 전문지식에 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을 담당할 수 있다.

② 겸임교원은 주당 9시간 이하의 강의 담당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7. 9. 1, 2019. 8. 1.)

**제7조 (처우)** ① 총장은 각 겸임교원의 임무에 상응하는 강의료와 출강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겸임교원은 본교의 제의식에 있어서 본교의 전임교원과 동일한 예우를 받는다.

③ 겸임교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24. 8. 31.)

④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적용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신설 2024. 8. 31.)

**제8조 (면직)** ① 겸임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면직한다.

1. 본직을 상실하였을 때(개정 2019. 8. 1.)
2. 제6조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교육과정 개편(개정 2019. 8. 1.)
4. 학부・과(전공, 트랙)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신설 2019. 8. 1.)
5. 기타 겸임교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신설 2019. 8. 1.)

② 겸임교원의 소속 학장 또는 대학원장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총장에게 면직을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1.)

**제9조 (교원인사위원회)** 겸임교원의 인사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본조 신설 2019. 8. 1.]

**제10조 (세부세칙)**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총장이 별도의 시행세칙을 정할 수 있다.(조변경 2019. 8. 1.)

## 부 칙

이 규정은 199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 임용되는 겸임교원에게 적용하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임용된 겸임교원에 대하여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이후 재임용되는 경우 이 규정에 의하여 신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20.08.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겸임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적용받은 것으로 본다.